

제4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록**  
(정기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9월11일(목)

장 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1)
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4)
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4)
10.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7)
1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4)
12.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90)
13.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0)
1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6)
1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2)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61)
17.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14)
18.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008)
19. 과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3)

20.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6)
21.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767)
22.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1)
2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1)
24.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1)
25.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1)
2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5)
2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2)
28.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62)
29.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2)
30.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55)
31.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0)
32.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7)
33. 제재처분 기준 정비 등을 위한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44)
34.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2)
35.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8)
36.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7)
37.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99)
38.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00)
39.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1)
4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0)
4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3)
4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0)
43.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15)

- 
44.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5)  
 45.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20)  
 4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4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4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4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0)  
 5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2)  
 5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0)  
 52.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53.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00)  
 54.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1)  
 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2)  
 56.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57.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58.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4)  
 5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1)  
 6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78)  
 61.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17)  
 62.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9)
- 

### 상정된 안건

- |   |   |
|---|---|
|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br>(의안번호 2200531) ..... | 4 |
|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                       | 4 |
|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br>.....                | 4 |
|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                              | 4 |
|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                                | 4 |
|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                          | 4 |
- 

(10시19분 개의)

### ○소위원장 이원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안건 중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촌진흥청 소관 법률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 방법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한 심사자료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 의견을 들은 후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거쳐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부 측에서 강형석 차관이 출석하셨습니다.

차관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식품부차관입니다.

오늘 많은 법이 상정이 되는데 특히 필수농자재법은 현장에서 많이 원하시고 또 국정 과제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현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2.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3.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4.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5.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6.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10시20분)

○**소위원장 이원택** 의사일정 제1항부터 6항까지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 I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의 총괄 부분부터 보시면 작년 8월 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를 한 후 올해 1월 달에 소위에 직접 회부된 법률안 1건을 포함한 6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공청회와 소위원회 심사를 각각 한 번씩 거친 바 있습니다.

4페이지의 총괄 검토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비 급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그런 효과가 기대됩니다마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첫째, 제도 설계가 생산 과정의 투입 비용 상승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시적 요인에 의한 물가 상승 등으로 투입재와 농산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실질소득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법률에 따른 보전기제가 활동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둘째로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시던 바입니다마는 정부의 시장 개입에 의한 보조금 지급이 이를 예상한 공급업체의 선제적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경우 정부가 지급한 보조금이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귀착되고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 정책 효과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농식품부가 몇 가지 대안을 마련해 와서 소위 자료에도 기재를 하였습니다마는 그 실효성과 정책적 영향에 대해 고려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실 필

요가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다음 셋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농업 생산 과정에서 소모되는 투입재이기 때문에 사용량을 부풀리는 등의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섬세한 보완장치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이런 내용을 살펴 주시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을 갖고 보완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고려하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위 자료에는 조문별로 농식품부가 가져온 대안을 중심으로 이를 협의 및 조정한 내용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는 제정안별로 농식품부가 추계한 연간 재정소요액이 6062억 원에서 1조 9335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 뒤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제정안별로 주요 내용과 조문 체계를 비교 정리해 놓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제명에 관해서는 제안된 6건의 법률안들의 내용과 제명을 참고해서 지원대상인 필수농자재와 에너지를 ‘필수농자재등’으로 표기를 하고 제명을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목적 또한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을 참고해서 공통된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의견과 같은 목적 조항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도 지원 대상인 필수농자재와 농업용에너지에 대한 정의를 필수농자재의 경우 투입재 중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비료, 사료 및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 품목으로 정의를 하고 농업용에너지의 경우는 석유류 및 농사용 전기에너지로 정의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수정의견은 1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체가 필수농자재등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재원을 마련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다음 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1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도 제정법률에 일반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다음 22페이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에 관해서는 이 내용은 다른 5건의 법률안에는 없고 전종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만 있는 내용입니다. 이 안의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이고 계획성 있는 국가의 시책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따로 대안을 가져와서 이러한 종합계획 대신 필수농자재등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대응지침을 작성·운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기에 이를 반영해서 23페이지에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의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역시 여러 제정안들을 종합하고 농식품부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조금이 공급자에게 과다하게 귀착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농식품부가 제안한 세 가지 대안이 26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그 실효성이나 정책적 효과, 영향 등을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31페이지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에 관해서는 위원회 신설을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정책 과정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명칭을 필수농자재등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심의사항을 필수농자재 품목 및 지원비율 등으로 규정한 수정의견을 33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의 내용인데 이에 대해서는 시군구 차원에서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또 윤준병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과 같이 이의신청기간과 처리 및 통보기간도 함께 규정한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38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 10번,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은 필수농자재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또 여기 규정돼 있는 제3자에 대한 제공·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영업비밀과 농업경영정보에 한정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2페이지입니다.

문대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의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자금 지원,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되 필수농자재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인건비나 교육훈련비 등을 제외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점검 및 환수 등에 관한 내용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지원 사항을 농식품부가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한 수정의견을 57페이지부터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0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중단이나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기존 지원의 어느 부분까지 중복 지원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행령에서 보다 구체화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3페이지입니다.

14번, 권한의 위임 등은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자구를 수정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에 66페이지 15번, 벌칙에 관해서는 이 법률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전반적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다는 처벌 수준이 낮기는 하지만 공익직불법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처벌 수준과 유사하게 그 벌칙의 내용을 수정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정안에는 제안되지 않은 내용입니다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수정하기 위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70페이지, 부칙에서 시행일은 농식품부가 아마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서 공포 후 1년으로 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으로 보여 시행일을 공포 후 1년으로 하되 이 조항 중에 7조 및 제17조는 공포 후 2년으로 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정부 측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부 측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고 저희도 대안이 있고 해서 아마 많은 토론이 될 텐데요. 저희가 간략하게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마는 법 제정 목적이라든지 상황 그리고 이렇게 되면 WTO 감축 보조 등을 감안해서 이걸 약간 비켜나가기 위해서는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이라든지 좀 특별한 경우를 넣는 게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어떤…… 물론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넣는 게 훨씬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1페이지 목적입니다.

목적도 수석전문위원님 수정의견을 수용을 합니다마는 제명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정의견도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상승으로' 앞에 '공급망 위기 등으로 인한'을 넣어서 목적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사회적 수용성이라든지 국제기구와의 문제 등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의 문제입니다.

정의 문제는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만 15페이지 제일 오른쪽 수정의견 칸 보시면 제2조 3호에 '농자재란 농업 생산에 사용되는' 돼 있는데 실제로 농업 자체의 정의가 농업 생산의 작물재배업, 축산업으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빼도 문제가 없고요 생산을 넣게 된다면 축산업을 포함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생산'이라는 말을 빼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정의견을 수용합니다마는 19페이지 보시면 여기에서도 '필수농자재 및 농업용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그 앞에 '공급망 위기 등의 상황에 있어서'라고 넣어 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21페이지입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21쪽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등의 수립·시행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수정의견을 수용하겠습니다.

23페이지 보시면 공급망 대응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일이라기보다는 구조화·직능화된 일이라서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24페이지입니다.

지원품목, 지원대상, 지원조건 및 지원기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제일 위쪽에 보시면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실제로 차액보조 외에 용자 등이 좀 필요할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필요한 자금을 용자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넣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3항이 빠져 있는데 3항은 정부가 지원하면 가격을 올릴 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서 대안 3개를 준비했습니다.

26페이지를 보시면 1안, 2안, 3안이 있습니다.

1안은 뭐냐 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라든지 부당한 행위를 한 업체는 지원할 때 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장관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게 2안입니다. 3안은 전문회계법인이 원가상승률을 조사해서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는 업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나머지 업체의 물품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안 같은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고 시기상으로 잘 맞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방법은 좋지만, 이게 현장에서 적용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대안으로 충분히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번에 대해서는 만약에 농식품부장관이 정해서 그 범위에만 지원한다면 실제로 가격이 높았는데 농업인이 샀다면 그 범위에 들어가는 데 대해서는 지원을 못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농업인들이 손해 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당한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세 번째, 정부가 직접 회계법인이라든지 전문기관을 통해서 원가상승을 조사하게 하고 일정 범위 내에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만 지원하게 한다면 아마 업체들도 그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거나 그러지 않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안과 3안을 복합해서 쓰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위원회의 설치에 대해서는 33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까지 있고요.

36페이지의 지급신청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38페이지에 조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안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39페이지 2항 중간 내용 보시면 이의신청은 ‘3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가장 수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지만 이것은 지급대상이 맞는지 단순 확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회까지 하게 되면 사실 번거로운 문제도 있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시군구에 맡기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위원회를 만들지 않는 게 업무하는 데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해서 삭제했으면 하고

요.

그래서 제10조에 있는 필수농자재등 지원 이의신청심의위원회는 삭제해 주시는 게 좀…… 쉬운 거라든지 저희들이 일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입니다.

실태조사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47페이지 조문에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수정의견 제일 아래쪽입니다. 한 3분의 2쯤 보시면 필수농자재등 원자재의 가격, 물량, 물류체계 및 재고, 쭉 해서 수출입 현황까지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보면 물류체계는 사실 크게 관계가 없고요. 그리고 재고 같은 경우에는 기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자면 주요국별 필수농자재의 원자재 수입가격 및 물량, 필수농자재 제품별 판매가격 및 물량, 필수농자재의 제조 및 판매업체별 재고 물량, 농업경영체별 필수농자재의 수입가격 및 물량 등으로 약간 한정해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49페이지입니다.

4항에, 좀 전에 말씀드린 정보를 모아서,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 가지 산재해 있는 정보를 모아서 지금 농정원에서 이런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세대 농업 의지도 있고요.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보다는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들과 유사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사업할 때 훨씬 효율적이고 쉽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11번 저탄소 농자재 우대 지원, 자금 지원 등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54페이지에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보시면 12조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우대 지원이 있는데 여기 보면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가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의 육성은 친환경농업육성법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사실 법 목적에 더 충실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12조 1항 2호는 이미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설 비료, 사료, 에너지 등은 온실가스 감축과 크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삭제해 주시는 것이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6페이지 보조사업의 점검 및 환수 등에 대해서는 57페이지에서 저희들이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7~59페이지에 있는데 58페이지 보시면 중간 아래쪽에 3항이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른 점검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것은 주로 프로젝트입니다. 사업지침서에 어떻게 점검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다 규정해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장관이 정해서 사업시행지침으로 하는 게 지금 저희들의 일반적인 업무 방식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훨씬 업무가 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입니다. 중복 지원의 제한에 대해서는 62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한의 위임 등에 대해서는 64페이지에 있는 조문을 통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오른쪽 수정의견 보시면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가 있습니다. 위탁이 들어간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시스템을 위탁하는 그런 경우에 규정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금 전에 장관이 정하는 기관으로 했기 때문에 위탁할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삭제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2항에 있는 위탁도 동시에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66페이지 벌칙에 대해서는 68페이지에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9페이지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는 수석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신설한 내용입니다. 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구체화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조문을 좀 구체화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태료 1항 1호를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 방해, 기피 및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자’ 그리고 2호에는 ‘제11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에 대해 거부, 방해, 기피 및 거짓 응답하는 자’로 했으면 하고요. 그리고 지금 2호는 3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17번 부칙에 대해서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고요. 조문 정리는 또 마지막에 조문별로 정리해 가겠습니다.

그 방식으로 하는 게 좋겠지요?

궁금 사항 먼저 질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명구 위원님.

○**강명구 위원** 차관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필수농자재법에 대한 1년 채정소요액이 보니까 여섯 분의 제정안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격차도 엄청나고.

만약에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이게 예상하기 쉽지 않은 게 항상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지원하는 거면 추측이 가능한데 필수농자재가 급등하는 경우는 사실 추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추세를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게 22년부터입니다. 한 세 번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는 쉽게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명구 위원** 의원님들 제정안 내놓은 6개 평균을 내 보면 열추 한 9500억 원 정도인데 이게 의원님마다 추계 예산이 다 다르겠지만 하여튼 간극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기준을 정하든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갈 건지에 대한 충분한 대안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명구 위원** 여기구 의원님 예산안 보면 1조가 넘고요. 그리고 여기구 의원은 의무

지원이네요, 이게. 다른 의원님들은 임의 지원으로 예상하는데……하여튼 정부가 제대로 소요 예산액과 추후 대안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05년 이후에 네 번 지원했는데 20년 동안 네 번이라면, 그 추세로 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그게 그대로 일어난다면 아마 2000억 내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강명구 위원** 2000억 내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명구 위원** 그러면 지금 의원님들 제정안 평균이 9500억인데, 재정 부담이 덜한 것은 좋은데 농민들이 만족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농민들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급보조율이라든지, 범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준병 위원님.

○**윤준병 위원** 4쪽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내용을 보면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 세 가지를 제시했어요. 생산 과정의 투입 비용 상승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시적 요인에 따라서 물가 상승 등으로 투입재 가격과 농산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현재 법에서는 품목별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재의 가격지수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하는 내용도 반영돼서 그러한 요소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이 내부적으로는 좀, 조문상으로는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맞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윤준병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제 작동돼서 품목별로도, 이 법 자체가 농민들의 부담인 생산원가가 갑자기 늘어나게 되면 부담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또 특정 품목만 갑자기 급등해서 생산원가의 상승을 유발하고 그게 경영비 부담이나 농가에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조금조금씩 오르더라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체적인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농자재 지원법에 의해서 배려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조문상으로는 들어 있지만.

그다음에 아마 지금도 그렇게 폐해로 작동하고 있는 내용 중에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고 하면 그 내용이 사실은 농민들에게, 생산하는 주체들에게, 경영체에게 지급돼서 부담이 좀 완화돼야 되는데 유통구조 자체가 지금 좀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생산업자들이…… 공급업체들이 이득을 보고 농민들에게는 별반 영향을 주지 않는 또 혜택을 주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이 문제를 이번 기회에 법을 제정하면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대안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들이 실효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틀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존경하는 강명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법을 만들었을 때 재정 부담이 얼마나 되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추계들을 여러 가지 했는데 이 내용들은 지급비율이라든지 보조율이 어떻게 책정되느냐, 의무사항이냐 또는 임의사항이냐 또는 실제 작동하는 요건이 어떠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추계하기로는 정부가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예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한 삼사천억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보이고.

의무화하고 좀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아내려면 제가 추계하기로 한 6000억 내외 이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한번 전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발의한 내용 보니까 1조 9335억 원이 추계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기간 문제가 있고요.

○**윤준병 위원** 터무니없는 추계인 것 같아요, 어떤 근거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자칫 불필요하게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내가 추계한 내용 보면 제가 판단키로는 한 4000억 내외, 그다음에 이것 입법화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제도적으로 안전장치 마련하면, 좀 늘어나면 한 2000억 정도 추가적인 지출 요인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2조 원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런 내용 보면 이걸 보는 분들이 ‘이것 대표적인 포퓰리즈다’ 이렇게 또 공격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추계 데이터들은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하니까요 그런 내용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문대림 위원님.

○**문대림 위원** 죽 보면 정부 입장도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아까 차관님께서 죽 설명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법 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기준에 관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서두에 몇 번 강조하신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단어가 자꾸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위기 상황 기준, 지원 시점과 관련해서 판단의 기준에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말이 족쇄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 공급망 위기 대응이라는 말로 이 법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피해 가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건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공급망 위기가 있다고 하면, 미국과 중국 간에 어쨌든 무역 갈등이 있었고 러우 전쟁 그리고 팬데믹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이외에 필수 농자재 관련해서 경영비에 큰 악재로 작용한 경우들이 이 공급망 위기 말고 없었느냐는 것 이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맞습니다.

○**문대림 위원** 때문에 정부가 공급망 위기로만 한정시키는 말을 앞단에 집어넣는 것은, ‘공급망 위기 등’으로 가면 팬찮은데 공급망 위기에 한정시키는 듯한 느낌, 결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 공급망 위기의 기준을 가지고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가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아까 ‘공급망 위기 대응 등’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대림 위원** 등이라고 했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걸 안 넣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부에서 볼 때

그러면……

○**문대림 위원** 그러니까 수용성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연 농업 경영비 상승의 요인이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는 하지만 그 이외의 요인들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문대림 위원**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한다는 순수한 측면으로 봐야 될지 그렇지 않은 정부의 또 하나의 방편인지 이게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혹시 외부에서 반대를 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아이디어를 낸 거고요. 저희가 법 만들어 놓고 현장에 적용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꼼수를 부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선의를 곡해했다면 제가 송구한데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굉장히 큰, 제가 사실 선의로 말씀드렸고요. 꼼수는 절대 아닙니다.

○**문대림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 차관님,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해서 언뜻 들기에는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 농민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어감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부 입장을 봤을 때는 법안의 완결성 자체적인 면에서는 아직 한참한참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나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셨지만 재정 소요가 얼마나 될 것이다에 대한 추계조차도 알 수 없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정확한 건……

○**이만희 위원** 제가 몇십조, 몇억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 나눴듯이 어느 정도의 대략적인 추계조차도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필수농자재는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꼽고 있는 그 품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이만희 위원** 예를 들어서 에너지 이런 건 빼고 여기 예시가 돼 있는 비료라든지 사료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예시 외에는 품목별로 이게 또 다 다른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전문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선제적 가격, 대표적인 것이 농기계잖아요. 농민들한테 농기계 구입에 따른 보조금 줬을 때 그 대부분이 사실은 공급업체의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 흘러가 버렸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이만희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뚜렷한 해결책이 없지 않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지원대상 농민별로 농업을 경영하는 규모가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각 농민마다 어떤 일정한 수준의 지원을 한다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규정을 둘 것인지.

말 그대로 농사 많이 짓는 대농이나 중대농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갈 것이고 규모가 작은 농민일수록 더 적은 지원을 받아가는 말 그대로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현상은 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응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네 번째로는 일정한 공급업체의 시장 참여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사전적으로 할 것이냐 사후적으로 할 것이냐, 사전적으로 했을 때는 어떤 근거와 저결 가지고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내용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점에 대해 차관님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필수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영비나 생산비를 보면 재료비, 광열비, 몇 가지 분야로 나뉩니다. 나뉘는데, 물론 품목별로 다르지만 경종·축산 이렇게 분류해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품목들은 비료·사료·에너지 있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 장관이 정하면 되기 때문에 혹시 품목이 빠지거나 그런 경우는 크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격 인상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말씀드리는데 비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하면, 물론 비료는 거의 90%가 계통공급 됩니다. 그래서 그 비료는……

○**이만희 위원** 말씀하시는는데 제가 잠깐 좀 말씀……

그러면 지금 여기 필수농자재 지원대상 품목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품목을 정하는 게 아니고 들어가는 원자재, 그러니까 비료 같은 그걸 정하는 거지 품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종 분야는……

○**이만희 위원** 공통적으로 쓰이는 경우에……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만희 위원** 자재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축사는 가장 높은 게 사료, 온실은 에너지 그리고 경종은 비료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공통되는 데 대해서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빠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가 품목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이만희 위원** 계속 답변을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리고 두 번째, 비료는 한 90%가 계통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나라 비료를 만드는 회사가 한 네다섯 개가 있는데 그 회사들이 개별적으로 가격을 올립니다. 그러면 농협이 가격 협상을 할 때 회계법인을 통해서 원가를 계산합니다. 재료비 얼마 올랐고 어떻게 했는지, 얼마 수입해 왔는지 해서 그 가격을 토대로 비료회사랑 다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격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공급을 해 버립니다.

저희들도 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비료, 인산이 한 50% 올랐는데 비롯값이 50%

오른다. 그러면 인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회계법인을 보내서 얼마에 수입해 왔는지 그리고 공정이 어떻게 되는지, 공정별로 어떻게 단가가 올랐는지를 조사해서 그 범위를 벗어나게 너무…… 예를 들어서 원가 요인은 20~30% 사이인데 40%로 변했다면 그 제품은 제외를 시킬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들이 위기대응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징兆가 있다면 이미 그걸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업체들은 업체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제품을 배제시키면, 그리고 비료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큰 비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비료 안 쓰게 되면, 비료는 한철에 만들어서 한철에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가격을 못 올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했고요.

그리고 부의부 빈익빈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소농은 100원 주고 대농은 200원 주는 게 아니라 소농은 100원을 썼기 때문에 10원을 드리는 거고 대농은 200원을 썼기 때문에 20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쓴 것에 비례해서 비례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금액은 크지만 그 사람이 그만큼 썼기 때문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약간 좀 현장에서 수긍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그냥 관계없이 대농은 크게 주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 직불제도 있지만 지금상한 같은 걸 다 듭니다. 지금까지 한 걸 보면 지금 상한을 넘어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참여 제한을 어떻게 할 거냐, 말씀드렸듯이 정조가 보이면 저희들이 미리 그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하기 때문에, 물론 법이 현장에 직접 적용돼서 시행해 보면 시행착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만희 위원** 정확한 답변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죄송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잘 검토하신 것 같기는 한데,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하고 조금 겹칠 수도 있는데 지원되는 필수농자재하고 그다음에 농업용에너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석유류하고 농사용 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기준을 정할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기준을 정해서 이것은 법에 조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농사용 전기 왜 이렇게 인상을 많이 했냐?’라고 하면 한전에서도 근거가 없어요. 뭐냐하면 자기들이 그간에 너무 싸게 공급했다, 그래서 인상하게 됐다 이게 답변이에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전종덕 의원님 법안 보면 이런 부분들, 인상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기 100분의 1이라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인상을 정해놔야만 농업용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사실 저희들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에 전기요금을 올렸습니다. 농업 쪽은 32원 올렸습니다. 그런데 32원이었지만 상승 비율은 거의 50%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낮춰 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그게 경영이랑 관련되기 때문에 못 낮춘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냐하면 3년간 분할 인상시켰습니다, 8원·6원·6원 이렇게. 다른 분야는 일시에 인상을 시켰고요.

그래서 여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 프로 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면 부처 반대라든지 한전 반대 때문에 시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일반 복지용도 그렇습니다, 전기료가 올라가면 그분 전기료를 깎아 주는 게 아니라 바우처를 줍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한 달에 30만 원 겨울철에, 여름철에 줍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저희도 좋겠지만 그걸 법에 정한다면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 차액을 지원하거나 다른 바우처 형식으로 주거나 그게 아마 현장 수용성 측면에서 훨씬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더 좋지만 실제로 집행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대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 저도 그거 질의하려고 했는데, 조문 심사 과정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전체 질의를 하고 계셔 가지고.

그러면 법안에 뭔가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안에 담기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이걸 시행령에 담아서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이게 어쨌든 지급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떻게 검토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급기준 같은 경우에는 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물론 품목 이런 것들은 법에 나와 있는 품목도 있고요. 나머지는 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시행령에 그런 기준을 담을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전종덕 위원** 그래서 법에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저는 냈고, 임호선 위원님처럼 저도 그 제기를 명확히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이 법 취지 자체가 생산비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지속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제정법입니다. 당연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산비 폭등이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예측 불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제정법이고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니까 종합계획이 필요한 거지요. 종합계획이 필요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변동 폭이 좀 더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한데 부정적 의견을 내셨어요, 5조에서.

그런데 지금 농림부에서 제출한 것은, 위기대응지침은 하위 개념이에요. 종합적인 계획과 시행계획 하에 위기 시에 이렇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종합계획이나 전반적

인 흐름과 계획 없이 위기대응만 하겠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되어서 종합적인 계획과 예측 가능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계획하에 구체적 시행계획을 세우고 거기에서 위기대응 할 때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지침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5조의 내용을, 제가 발의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 내용을 분명히 포함을 시켜야 된다.

그리고 제정하는 법에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위 개념으로 이렇게 지침 형태로 조정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꼭 반영하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시행계획이나 대응 매뉴얼이나 법에 있는 거라서 상하관계를 구별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법에서 대응 매뉴얼을 만드나 시행계획 만드나 법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시행규칙에서 지침 만들어서 하라 그러면 그거는 상하관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행계획만큼이나 매뉴얼도 법적인……

**○전종덕 위원** 차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면 법을 왜 만들어요, 다 지침으로 해버리지? 그거는 아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러니까요, 위원님. 이 대응 매뉴얼은 법에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성격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망 위기라든지 또 다른 이유로 생겼다면 어떻게 대응할 거냐에 대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리 파악을 해서 대응되면 그때 위기 상황에 맞는 조치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정형화되고 구조화된 일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 생산비 저감대책을 세워라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정형화된 일이라 오히려 시행 계획을 세우게 되면, 한 번 세우고 나면 더 이상 세울 것도 없고요. 물론 상황이 생기겠지만 오히려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법에서 매뉴얼을 만들려고 하면 그 매뉴얼은 법적인 효력이 있고 오히려 시행계획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같은 내용으로 담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마다 세우고 또 시행계획 세우고 하면 너무, 행정 측면에서는 시군구라든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저는 이 법을 농식품부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를 보여 주는 내용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필수농자재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농업의 방식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종합적인 계획과 목표하에 이 사업이 시행되고 집행돼야 되는데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임시 대응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대응 매뉴얼을 통해서 해 나가겠다고 저는 이렇게 들려 가지고 그렇게 접근할 문제냐, 이 법이.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오히려 계획보다 대응 매뉴얼이 훨씬 치밀합니다. 왜냐하면……

**○전종덕 위원** 그거는 당연히 집행을 세세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위 개념이라 말씀드린 거예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위원님……

**○전종덕 위원** 종합적인 목표와 계획하에 이것들이 구체적, 이 상황에 대해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집행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나오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대응 매뉴얼은 일반적으로 세우는 계획에 따라 나오는 거고요. 매뉴얼 보시면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뭐 할 건지 20% 상승했을 때 뭐 할 건지 굉장히 상세하게 나와서 오히려 우리가 계획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런 계획을 담은 게 대응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시행계획이 없다고 해서 계획이 없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저희들은 매뉴얼 만들어서, 그 매뉴얼을 만들기 위한 정부 방침을 세우고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고요.

○**전종덕 위원**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접근할 거냐, 큰 목표와 방향으로 접근할 거냐의 문제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매뉴얼에 기초해서 할 수 있겠지만 이 법이 어쨌든 앞으로도 정부가 책임 있게 어떻게 어떻게 이 사업을 펼쳐 가겠다라는 그런 계획과 목표하에 추진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 놓고 말하면 매뉴얼은 필요하지요, 어쨌든 집행을 하려면. 집행하려면 필요한데, 그러면 계획하에 매뉴얼을 만드는 것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거는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위원님, 매뉴얼을 만들기 위해서, 매뉴얼에 들어가는 내용을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세워서 매뉴얼을 만드는 거고요. 지금처럼 말씀하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하는 거는 너무, 행정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지 않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매뉴얼을 만들면 계획을 만듭니다. 그 계획이 매뉴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그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잠깐, 주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또 임호선 위원님이 질의 요청했으니까요 좀 돌고 또 하십시오.

○**임호선 위원** 과거에도 제 기억으로 공청회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보조금이 공급업체의 이윤으로 귀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 법안에 보면 이걸 걸러내는 거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으로만 되어 있고 공급업체에 대한 도덕적 해이, 예컨대 지금도 사실 비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퇴비 같은 경우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있어요. 현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지난주에 간담회 때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공급업체에 대한 규제 방안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요? 형사 처벌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공급망에 들어올 수 없게끔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 부분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지 않고 한다면 그걸 순전히 정부에서 출입조사부터 포함해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 사람들에 대한 제재 방안 그리고 예컨대 만약에 그 사람들 또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신청했을 경우에는 참여를 배제한다든지 또 그에 따른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방안을 법에 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 3개를 말씀드렸는데 먼저 하나 말씀드리면 원가상승률을 따지면 100원짜리가 110원 돼야 되는데 120원 됐다. 그걸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설정한 자기들 마음 그걸 자유시장경제에서 통제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거는 윤준병 위원님께서 내신 아이디어 중의 하나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행위를 하거나 시장남용적인 걸 한다면 당연히 그거는 부정당업자로 해서 그업체는 배제를 시킬 겁니다. 그게 저희들 1안에 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 가지고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그 제품이 너무 가격을 올려서 시장에 나오게 되면 그 제품에 대해서는 보조를 안 할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3안에 있는, 장관이 회계법인이라든지 전문기관 시켜서 원가계산을 해 봐라 했더니 20~30원 사이의 가격상승 요인이 있습니다 했는데 어느 업체는 40원을 올렸습니다. 그 업체는 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체는 업체를 빼 버리고 부정당업체는 아니지만 그중에 몇 개의 제품을 많이 올렸다면 그 업체의 제품은 정부 보조에서 제외를 시켜 버리면 농업인들은 그걸 아마 사용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재재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러니까 아예 참여 제한을, 몇 년 동안 못 하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조금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부정당업자가 되면 그런 게 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미 부정이라든지…… 거짓·부정·위법행위를 하지 않으면 사실 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가 가격을 과도하게 올렸어?’라고 해서 어떤 법으로도 그거는 처벌을 못 합니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우리 스스로 그런 제품을 배제를 시켜 버리면 그 업체는 그 신호를 알게 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과하게 가격을 올리지는 못할 겁니다. 지금 비료가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유기질비료는 생산자가 너무 많고요. 그거는 원료가 전부 국내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개 원료가 남는 도에서는 싸게 공급하고 원료가 부족한 데서는 좀 비쌉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체계는 좀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원료가 남으면 다른 도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싸게 보내 버리고 부족한 데는 가격이 높은데 싼 게 오니까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비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원료가 완전히 해외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요.

유기질비료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폭등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많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그렇게 많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종덕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보면 안 돼요, 간단한 거 하나만?

**○소위원장 이원택** 예.

**○전종덕 위원** 필수농자재 대상에서 농약은 빠졌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지금은 제외가 돼 있고요. 물론 농약도 원재료가 거의 90% 수입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농약의 가격이 폭등했거나……

**○전종덕 위원** 그런 일이 없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 경우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전종덕 위원** 농약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농약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농약은 물론 시장이 1조가 넘습니다마는 대부분 해외 수입이고요. 우리나라가 만든 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농약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약은 경종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종덕 위원** 그래서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미애 위원님.

○**임미애 위원**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늘 고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농자재의, 비료든 사료든 유류든 이런 것들이 막 가격이 올라가서 그것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사용하는 농가에게는 지원과 혜택이 있는 건데 실제로 농민들이 그걸 또다 사용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제도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임미애 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이런 농자재 지원과 관련된 보조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요 그 사람이 생산한 작목 그다음에 이 작목을 생산하는 데 필요하게 되는 농자재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경영면적 그다음에 이 사람의 소득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보조금 카드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 농사를 짓는 데 쓸 수 있는, 농자재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방식의 보조금이 책정이 돼요. 그런데 이게 농가마다 다 달라요. 규모가 있으나 어느 일정한 소득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에서 보조금 카드가 나오고요. 안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한 40만 원, 50만 원 보조금 카드가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분은 이걸 가지고 본인이 직접 거래하는 방식으로 해서 시설 하우스를 하는 경우에는 기름을 쓰기도 하고 그야말로 농자재를 구입하기도 하고 농약을 사기도 하고 퇴비를 거래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 카드가 시행된 지 몇 년 됐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정부가 정책적으로 비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걸러진 몇 개의 상품이 있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식일 경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농림부가 이 제품을 보조대상 제품으로 딱 선정하는 순간 사실은 가격은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농기계 반값 사업 시작하면서 농기계 값 올랐다는 불만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그마한 군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농자재를 지원해 주는 곳들이 꽤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법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그 법에 지원하는 품목을 굳이 개별 품목으로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해 두고 그것을 국가가 지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옳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히려 지역 특성에 따라 농작물이 다 다르고 그 농작물에 소요되는 비료든 퇴비든 농자재가 다 다르고 이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면 오히려 그런 방식이 훨씬 더 유용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현장에서 생각한다면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경영비 절감도 목적이지만 위기 상황 등에 대응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카드를 드린다면 좋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지원이 되어 버리고요. 그런 일반적인 지원에 따라 오는 문제가 많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것으로 다 살 수 있으니까 다 올려야지 그런 것도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제가 볼 때는 경영비 절감도 있지만 좀 포커싱을 해서 위기 상황 등에 대해서 농업인들이……

만약에 위기 상황에 비료가 높아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23년인가 기름값이 폭등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설농업 하시는 분들이 포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못 짓겠다고. 왜냐하면……

○임미애 위원 잠깐만요.

이 법이 제정이 되게 되면 기준가격이 선정된다는 소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아닙니다.

○임미애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22년 5월 달에 전쟁 터지면서 기름값 폭등했고 그 당시 22년 5월 기준으로 유류대가 편성이 되면서 이것에 미달되면 지원이 안 되고 그것보다 높으면 지원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긴급하게 예산이 편성된 적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편성됐지만 실제로 24년도에 이것 전혀 집행되지 않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것처럼 이것도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위기 상황 대응용이면 기준가격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기준가격을 일정한 비율만큼을 넘어서게 되면 지원해 준다 이런 방식이 되는 거라는 말이 되거든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저희들이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기 대응매뉴얼을 보시면 평년가격에 대해서 한 5% 이상 상승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원자재, 인삼이라든지 그런 원자재 할당관세를 해서 가격을 낮추거나 하는 그런 조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이게 평소 가격의 50% 이상이 되면 그때는 가격차 보전 정책을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처음부터 기준가격을 정해 놓으면 나중에는 그 기준가격에 따라서 무조건 지원을 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가격을 정하는 것은 사실 보면 법 제정 취지라든지 그런 데 맞지 않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 상관없이 기준가격을 정한다 그러면 위기대응이라든지 지속가능성이 아니라 일상적인 지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법 제정 취지가 달라져야 되고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요, 혹시 산업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해 보지 않으셨나요? 예를 들면 비료다 내지는 농자재다, 새로운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를 고려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기업에서 더 많은 기술혁신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기술혁신을 통해서 새롭고 고품질의 뭔가가 개발이 되었을 때 그로 인한 비용 상승은 결국은 농가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일정한 가격 이상의 범위, 레인지지를 벗어나게 되었다라고

판단해서 정책 시행에서 문제가 발생할 요소는 없나요? 그러니까 기업의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기업의 기술혁신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법에서 농자재 업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혁신을 하면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 예를 들면 자동화시켰다 그래서 인건비가 줄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런데 너무 투자를 많이 해서 올라갔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기만이 아니라 기업이 구조조정 과정에서 올라갔다면 그것도 아마 지원대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농업인들은 내 의사와 무관하게 가격이 50% 올랐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지요. 그러면 비료를 안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정부가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기술혁신에 따라서 가격이 5% 올랐는데 그것을 정부가 지원해야 되나? 그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농업인들께서 수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내가 수용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저는 정부가 지원해서……

왜냐하면 농산물이 생산 안 된다면 제일 갑갑한 건 소비자나 농정을 책임지는 저희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아마 단계를 두어서 지원할 건 지원해야 되고, 이게 공급망 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것은, 사전에 짓는 것은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임미애 위원** 그러니까 저는 취지와 다르게, 이 취지가 그 선의를 충분히 반영해서 시장에서 작동할 것인가를 보면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그리고 농업과 관련한 뒤의 각종 산업이, 농업을 받쳐 줄 수 있는 뒤의 산업이 충분하게 발달하지 않는 이유가 뭔가를 고민해 본다면 저는 이런 것도 한 측면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법이 선의대로 시장에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이 좋은 의도로 답변하시지만 저는 시장은 실제로 그렇게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법에다가 중요한 산업은…… 물론 비료관리법도 있고 있지만 중요한 산업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서 그런 혜택이 농업인들한테 오고, 사실 그것을 하고 싶었는데 이 법의 범위를 벗어났기 때문에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임미애 위원** 위기 상황에 대비한다고 하면 기준가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런 방식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지자체의 모범사례들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농가가 직접 선택함으로 해서 실제로 자재비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정책을 작동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라고 한다면 기준가를 설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11시에 총회가 있어서 양해를 받고 나갔고요. 전종덕 위원도 일정상 잠시 나가신 것 같은데 오늘 전체적인 일정은 한 11시 40분

까지 정리를 하고, 식사는 본관 1층 식당에 준비가 돼 있습니다. 끝나고 내려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아까 3시쯤 다시 모이자고 그랬는데 2시에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본회의 일정이 3시에 될지 4시에 될지 어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잠정적으로 2시에 모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일단 차관님, 쟁점 중의 하나가 지금 필수농자재, 여기 목적 조항에 보면 가격 급등, 경영의 어려움, 위기에 처했을 때거든요. 다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을 때 또는 경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락, 농가 경영이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처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까 공급망 위기라고 하는, ‘공급망 위기 등’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농자재를 지원하자는 취지는 아니잖아요, 이 법안의 취지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뭔가 가격이 폭등했을 때 오는 지원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래서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제적인 공급망 위기도 있을 수 있고 국내적인 위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공급망 위기를 국내외 공급망 위기로 표현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국외·국내 공급망 위기라는 표현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의 취지가 일상적으로 필수농자재를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하는 것인가? 지금 정부는 위기가 왔을 때 지원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과거에, 그러면 최근 2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해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위기가 온 사례들을 접검해 보셨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네 번이 있었고요. 그때 위기가 뭐냐 하면 전부 기름값이 상승하거나 전쟁 때문에 중국에서 요소수를 제한해 가지고, 해외 요인이 전부였고요. 전부 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기름값이 폭등하거나 비롯값이 폭등한, 대부분이 다 그런 사태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상태로 해서 혹시 뽑아 본 추계는 있나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네 번 지원한 것에 대해서는 돈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 어느 확률로 일어날 거냐, 더 자주 일어날 거냐 덜 일어날 거냐, 강도를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는 사실 추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번을 가지고 얼마 들었는지는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뽑아 보세요. 왜냐하면 아까 윤준병 위원이 얘기했듯이 포퓰리즘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윤준병 의원안이 1조 9000억 정도 나오길래 저도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추계가 이렇게 나오나 싶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 폭등적 요인이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한 네 번 정도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 과거 데이터를…… 미래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강도라든가 폭이라든가 이런 게 예측이 쉽지 않다 하더라도 과거 사례를 들어서라도 추계치를, 아까 한 2000억 정도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지금 보니까요 최대 금액이 3600억이었고요 최소가 2500억이었습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아마 3000억 약간 오버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최대가 3600억, 최저가 2500억?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한 번 일어날 때마다.

그래서 앞으로 비료나 사료나 에너지를 적게 쓸 경향도 있고, 예전에 비해서 양은 많아졌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참고자료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추계로 쓰기는 참 되게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차관님, 그 부분을 그렇게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 법사위에서는 이 법 자체가 흔들려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법에 위원회까지 다 꾸려 가지고 하기로 한다면 현재 여기서 지금 우리가 필수농자재로 정한 품목이 죽 있잖아요. 또 거기 위원회에서 정해질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면 현재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된다면 이 법의 기제가 발동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갑니다라고 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것은 만들겠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당장 도대체 이것 뭐 하자는 거냐 소리 나오지요.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포퓰리즘이라는 얘기 당연히 나오는데 그렇게 준비하셔 가지고는 저는 준비에 조금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윤 국장님.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업정책관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필수농자재법과 관련돼서 지난 한 20년간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을 돌려 봤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구체적인 지원방식이라든지 지원비율 이런 것들은 하위법령에서 정리가 될 거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짜 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경종농가 같은 경우는 농자재구입가격지수가 한 30% 또는 40% 정도 인상이 됐을 때 발동하는 것으로 가정을 했습니다, 경종농가 그리고 축산농가 각각. 그리고 지원율 같은 경우는 직전 5개년의 평년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잡았고요. 당해 연도 와 가격 차이의 한 50% 정도를 지원한다 그리고 국비 부담을 한 50%로 하고 지방비를 50%로 한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정을 했을 때 05년부터 24년까지 총 네 번 발동이 되고요. 아까 차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22년 같은 경우 제일 많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국비 들어가는 것이 3600억입니다. 만약에 지방비를 포함하게 되면 한 7200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무튼 임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아마 법사위에 가면 과거 사례를 조금, 추계도 정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미래도 시나리오를 가상 1, 2, 3 정도는 짜서 설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아무튼 오늘 이 법안 조문 심사를 오후에 하기는 하겠지만 최종 방망이를 때릴지 다음 법안소위 때 한 번 더 갈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그런 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아까 담합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렇게 회계사가 확인을 해서 그 회사를 뺀다든가 제품을 빼 버리면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전 조치를 통해서 못 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래서 사후적으로 과징금이라든가 징벌적인 조치는 없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가격 올린 것에 대해서 징벌 조치는 위법이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임호선 위원** 참여 제한 같은 조건은 걸 수 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리고 아까 대농하고 소농하고 농자재 쓰는 양이 다를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역진적 요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이만희 위원 얘기인 것 같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그런데 지금은 비례적으로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쓴 분은 10원을 지원하게 되고 200원을 쓴 분은 20원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쓴 분은 많이 받아 가서 사실 비슷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보조금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농가가 1ha인데 100을 주고 0.5ha인데 50을 준다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더 힘든데 왜 더 적게 주느냐…… 그런데 이것은 사용량에 따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지출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깎아 주겠다 하는 거라서 역진적 요소가 가미될, 물론 직불금같이 생산량에 관계없이 면적에 따라 지원하게 되면 저희들이 역진적 요소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용량에 따라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오히려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너무 지원 안 해 줘서 나는 농사 못 짓겠다. 물론 그런 경우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너무 많이 지원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상한을 둬서 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예.

○**문금주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아까 위원장님 질문 주셨는데 가격 폭등이라 할지 그런 위기 상황이 네 번 정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문금주 위원** 그때 재정 지원을 했을 거고 그 재정 지원을 어떻게 어느 정도 했는지 아까 다 자료 요구를 하신 거지요?

○**소위원장 이원택** 예.

○**문금주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조건으로 하면 굳이 이 법이 필요하냐라는 얘기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네 번 정도 위기 상황이 있었을 때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어떤 형태로 지원이 됐는지 하는 부분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그러니까 정상적인 시장의 작동을 통해서 농자재뿐만이 아니라 전체 물가가 올라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상적 시장 작동으로 간주하고, 그래서 일상적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내외 공급망 위기에 따라서 폭등을 하거나 등등에 해당될 때 지원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대응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소위원장 이원택** 마지막으로 임호선 위원님.

○**임호선 위원** 여기 문제에도 도덕적 해이 쪽만 우리가 언급을 했는데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전기라든지 석유류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맥시멈을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률에 있어서 부농이나 대농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보조금이 다 나간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걸 어느 정도 어디까지를 일종의 커트라인식으로 할 거냐라고 하는 논의도 내부적으로 필요합니다. 도덕적 해이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어해 줄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선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십사……

○**농림축산식품부차관 강형석**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원택**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상황이 그래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리면 잠시 정회하였다가 2시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 위원(11인)**

강명구 김선교 문금주 문대림 윤준병 이만희 이원택 임미애 임호선 전종덕  
정희용

###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황충연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정책기획관 김정주  
농업정책관 윤원습